

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

일괄개정조례안

(이진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6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7.

발의자 : 이진환, 전해연, 조성대,
박경원, 박윤옥, 이경숙,
한근수, 정현미, 김지훈(민)

1. 제안이유

상임위원회의 심사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를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례들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사항(제1조- 안 제2조, 제3조, 제4조)

- 자치행정위원회 → 기획행정위원회
- 복지환경위원회 → 문화복지위원회

나.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변경사항(제1조- 안 제3조제2항제2호)

- 문화교육국, 남양주문화재단을 문화복지위원회로 이관

다.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변경사항(제1조- 안 제3조제2항제3호)

-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도시교통위원회로 이관

라.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변경사항(제1조-안 제3조제2항제4호)

- 농업기술센터를 문화복지위원회로 이관

마.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정비(제2조 ~ 제4조 안)

- 「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 등 3개 조례
내 위원회 명칭 수정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: 덧붙임

5. 예산수반사항: 덧붙임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6. 관련법령: 덧붙임

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
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「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자치행정위원회”를 “기획행정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복지환경위원회”를 “문화복지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자치행정위원회”를 “기획행정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호 마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하며, 바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한다.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복지환경위원회”를 “문화복지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목, 라목, 바목, 사목으로 하며, 나목, 마목,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종전의 라목을 삭제한다.

- 나.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마.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사. 남양주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

제3조제2항제4호라목 중 “농업기술센터, 상하수도관리센터 및 도로관리사업소”를 “상하수도관리센터, 도로관리사업소 및 공원녹지관리사업소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자치행정위원회·복지환경위원회·도시교통위원회”를 “기획행정위원회·문화복지위원회·도시교통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(「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「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 중 “자치행정전문위원, 복지환경전문위원, 도시교통전문위원”을 “기획행정전문위원, 문화복지전문위원, 도시교통전문위원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남양주시의회공인조례」의 개정) 「남양주시의회공인조례」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2호 중 “운영·자치행정·복지환경·도시교통위원회”를 “운영·기획행정·문화복지·도시교통위원회”로 한다.

제4조(「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「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자치행정·복지환경·도시교통위원장”을 “기획행정·문화복지·도시교통위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1.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남양주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자치행정위원회</u>: 8명 이내</p> <p>3. <u>복지환경위원회</u>: 8명 이내</p> <p>4. (생 략)</p> 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자치행정위원회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라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 <u>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바. ~ 자. (생 략)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차. 남양주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3. <u>복지환경위원회</u></p>	<p>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기획행정위원회</u>: -----</p> <p>3. <u>문화복지위원회</u>: -----</p> <p>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기획행정위원회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삭 제>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마. ~ 아. (현행 바목부터 자목까지와 같음)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삭 제></u></p> <p>3. <u>문화복지위원회</u></p>

가. (생략)

나.·다. (생략)

라.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
에 속하는 사항

<신설>

마. (생략)

<신설>

4. 도시교통위원회

가. ~ 다. (생략)

라. 농업기술센터, 상하수도
관리센터 및 도로관리사업
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
제4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·②
(생략)

③ 자치행정위원회·복지환경
위원회·도시교통위원회의 위
원장 및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
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문화교육국 -----

-

다.·라. (현행 나목 및 다목
과 같음)

마.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
하는 사항

바. (현행 마목과 같음)

사. 남양주문화재단 소관에
속하는 사항

4. 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상하수도관리센터, 도로
관리사업소 및 공원녹지관
리사업소 -----

제4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기획행정위원회·문화복지
위원회·도시교통위원회-----

-----.

2.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협의회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당연직 위원 : 운영전문위원, <u>자치행정전문위원, 복지환경전문위원, 도시교통전문위원</u> 의정팀장, 의사팀장, 의정홍보팀장</p> <p>2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9조(협의회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<u>기획행정전문위원, 문화복지전문위원, 도시교통전문위원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3. 남양주시의회 공인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종류) ① (생략)</p> <p>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운영·자치행정·복지환경·도시교통위원회</u> 위원장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2조(종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운영·기획행정·문화복지·도시교통위원회</u> -----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
4.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위원의 위촉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의회 자치행정·복지환경·도시교통위원장</u>(이하 “소관 상임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</p>	<p>제4조(위원의 위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기획행정·문화복지·도시교통위원장</u>----- -----.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
-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- 남양주시의회 공인 조례
-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소관 사무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사항으로,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성격을 띠고 있어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함

4. 작성자

- 의회사무국 운영전문위원 서용관

☑ 「지방자치법」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7조(위원회의 권한)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.

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